

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☐ 자동차대여사업		관리위탁		☐ 신고서 ☐ 허가신청서		처리기간 7 일	
위탁자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② 주민등록번호				
	③ 주 소		(전화:)				
	④ 사 업 의 종 류						
수탁자	⑤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⑥ 주민등록번호				
	⑦ 주 소		(전화:)				
	⑧ 사 업 의 종 류						
위탁내용	⑨ 사 업 의 종 류		(운행형태:)				
	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						
⑪ 관 리 방 법							
⑫ 위 탁 기 간							
⑬ 위 탁 사 유			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3조·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(신청)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							
						수수료	1,400원
첨부서류	구 분	신고인/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			국토교통부장관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·도지사 확인사항	
	공 통	1.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.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(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3.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				없 음	
	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	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			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	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	1. 정관(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) 1부 2.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.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				없 음	
	수탁자가 개인인 경우	없 음				주민등록표 등본(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)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	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